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35
----------	-------

발의연월일 : 2026. 3. 12.

발 의 자 : 김정호 · 서왕진 · 이연희
안태준 · 박 정 · 윤후덕
전진숙 · 임미애 · 허종식
이수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난임 시술은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부담을 수반하고 있음. 특히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대체인력 확보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실질적인 소득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음. 또한 난임치료휴가의 유급기간이 확대됨에 따라 정부의 지급 기간 역시 이에 맞추어 조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의 책임을 보다 적극적으로 이행하고자 함(안 제76조제1항제3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43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1항제3호 본문 중 “2일”을 “4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난임치료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따라 사용하는 유급 난임치료휴가 기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제75조 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은 다음 각 호의 휴가 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통상 임금(휴가를 시작한 날을 기준 으로 산정한다)에 해당하는 금 액을 지급한다.	제76조(지급 기간 등) ① ----- ----- ----- ----- ----- -----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 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u>2일</u> . 다만, 피보 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 원 대상기업인 경우로 한정하 다.	3. ----- ----- ----- ----- - <u>4일</u> . ----- ----- -----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